

전결
의규
함호정

| | | | | | | | |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|---|----|---|
| 기안자 | 이근영 | 전화번호 | 293 | 공보 | 필 | 요 | 불필 | 요 |
| 사방소계장 | 수리 파장 | 산업국장 | 계 | 부시장 | 시 | 장 | | |
| 협조자 | 법제국장 | 기획국장 | 총무 | 보 | 존 | | | |
| 서명 | (인) | (인) | (인) | 년 | 한 | | | |
| 기년 | 안월일 | 시년 | 행월일 | 1986.5.28 | 통 | 정 | 서 | 기 |
| 분류기호 | 문서번호 | 1152.2-0415 | 계 | 1986.5.28 | 서울특별시 | | | |
| 경수참 | 유신조 | 각 | 안 | 합 | 주 | | | |
| 제 | 목 | 사방 | 리 | 칭 | 리 | 해 | 리 | |
| 위 | 안 | 보 | 부 | 결 | 재 | | | |

본 신청자는 1986년도에 사방리로 지칭하고
 86년도의 보수한 임야이나 인위적인 피복으로 현존물어
 있는 미립물지대(피복)일 뿐 아니라
 86년도부터 계속 도심을 취척하던 연동지대로
 86년도에 사회상 주체 지역이며 계속 도심 취척을
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므로 아래와 같이 부장 해리 취
 척하리 합니다.

5.29
4.28
5.29
6.1

가. 지령변리 1.6927
 나. 해리변리 0.0720
 다. 산변리 1.8207

제 2 안

고 지 분

서울특별시 고시 제 912호

지방 다업법 제 20조의 규정이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 지령지를 해리 고시한다.

제 1966년 1966. 11. 28 일

서울특별시청 김 현 우

해리지

| 임야소유지 | | | 적용 | 지적 | 지정 | 해리 | 변리 | 소주자 | | 비고 |
|-------|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|------|------|
| 구 | 종 | 면적 | | | | | | 주 | 소 | |
| 상 | 향 | 30 | 임 | 상 | 상 | 상 | 상 | 전북전주 | 전남전주 | 전남전주 |
| 0 | 향 | 40 | 임 | 상 | 상 | 상 | 상 | 전남전주 | 전남전주 | 전남전주 |

2. 해리 사유

본 지령지는 1963년의 지방지령 제 1963년도의 본
 주 지령지 장소이나 이후 인위적인 희폐로 시설물이 존
 재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구역이 양반이 소유한 장소로서 제
 주 농업소장을 위한 시설을 하기보다 주로 건설용 자
 재를 취할 것이 되어 이용상 호화자 금으로 해리 함

제 3 안

서울특별시청 김 현 우



귀하가 제출한 수방 지령의 해체 신청의 기하여는

별첨 고지문 사본과 같이 해체 하였기 등리 함 4라

추첨 고지문 사본 및 해처리 도면 각 1부

제 5번

수 신 승평부 장관

발 신 지 령

첨 소 순경국 조경과

제 목 수방 지령의 해체

아래와 같이 수방 지령의 해체 방법이 의서 별리의 같

이 해체 하였기 보고 함 4라

가. 순산조 1152.2 ~ 5085 (65. 12. 31) 호 3-차 함

나. 타산조 1152.2 ~ 9280 (66. 3. 11) 호 2-가 (1) 함

이 무거 해체함

추 첨 수방 지령의 해처리 소서 1부

제 5안

수 신 수신처 강조

발 신 지 령

제 목 수방 지령의 해체 등리

별첨 고지문 사본과 같이 해체 하였기 등리 함

추 첨 고지문 사본 및 해처리 도면 각 1부

수신처 수령 4. 시각 63.

제 6안

수 신 민보국장

발 신 관 임 주 령

제 목 수방 지령의 해체 고지 의지

277

행의과 줄이 고다리인=4 <보이 계<하의 주<기

바람4라

우 감 피관 수분 1부



277

砂防地 指定 解除地 調書

| 소재지 | | | | 지목 | 지적 | 지정 면적 | 해제 면적 | 잔면적 | 지정 및 시공년도 | | 해제근거 | | | 비고 |
|-----|----|----|-----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|----|
| 시 | 구 | 동 | 지번 | | | | | | 지정 년도 | 시공 년월일 | 해제 년월일 | 고시 번호 | 해제사유 | |
| 서울 | 강도 | 강과 | 30리 | 마을 | HA 168K | HA 168K | HA 0026 | HA 160P | 1959 | 1960 2.14 | 66 | | 동면구 1192 ~ 5085 (66.1.31) 호구~가항 | |
| | | | | | | | | | 3.31 | ~ 6.27 | 5. | | 여면구 115.2 ~ 3280 (66.3.11) 2~주(1)항 이러거 해제함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